

공 보

제690호 2019. 3. 27.(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31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9-3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5
거창군 거창읍 고시 제201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0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395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거창군 공고 제2019-408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18
거창군 공고 제2019-409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25
거창군 공고 제2019-411호 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30
거창군 공고 제2019-412호 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32
거창군 공고 제2019-414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신청 공고	34
거창군 공고 제2019-415호 2019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38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8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9호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49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0호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58

회 감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2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조가야로 131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573-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조가야로 131	2009-07-02	2019-03-27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252-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빠재로 1477-62	2009-12-28	2019-03-27	고제면에 위치한 빠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71-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1길 30	2009-04-01	2019-03-27	고려 때 박첨지가 두문수도 하였다고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48-3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422-137	2009-04-01	2019-03-27	장군봉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39-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하월평길 73	2009-04-01	2019-03-27	마을 뒷산인 낙하산이 반달 모양이고,앞에 넓은 우암들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9. 3. 27.

거 창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유형	등급	면적(㎡)	
남산1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산5-5일원	붕괴위험	D	3,313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신촌1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189-1일원	붕괴위험	D	2,684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3.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남산1	2019년 이후	1,430	사면보강 등 정비공사 A=1,800㎡	
신촌1	2019년 이후	1,160	사면보강 등 정비공사 H=5m, L=120m	

※ 사업비 및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총괄과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5.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일 : 2019. 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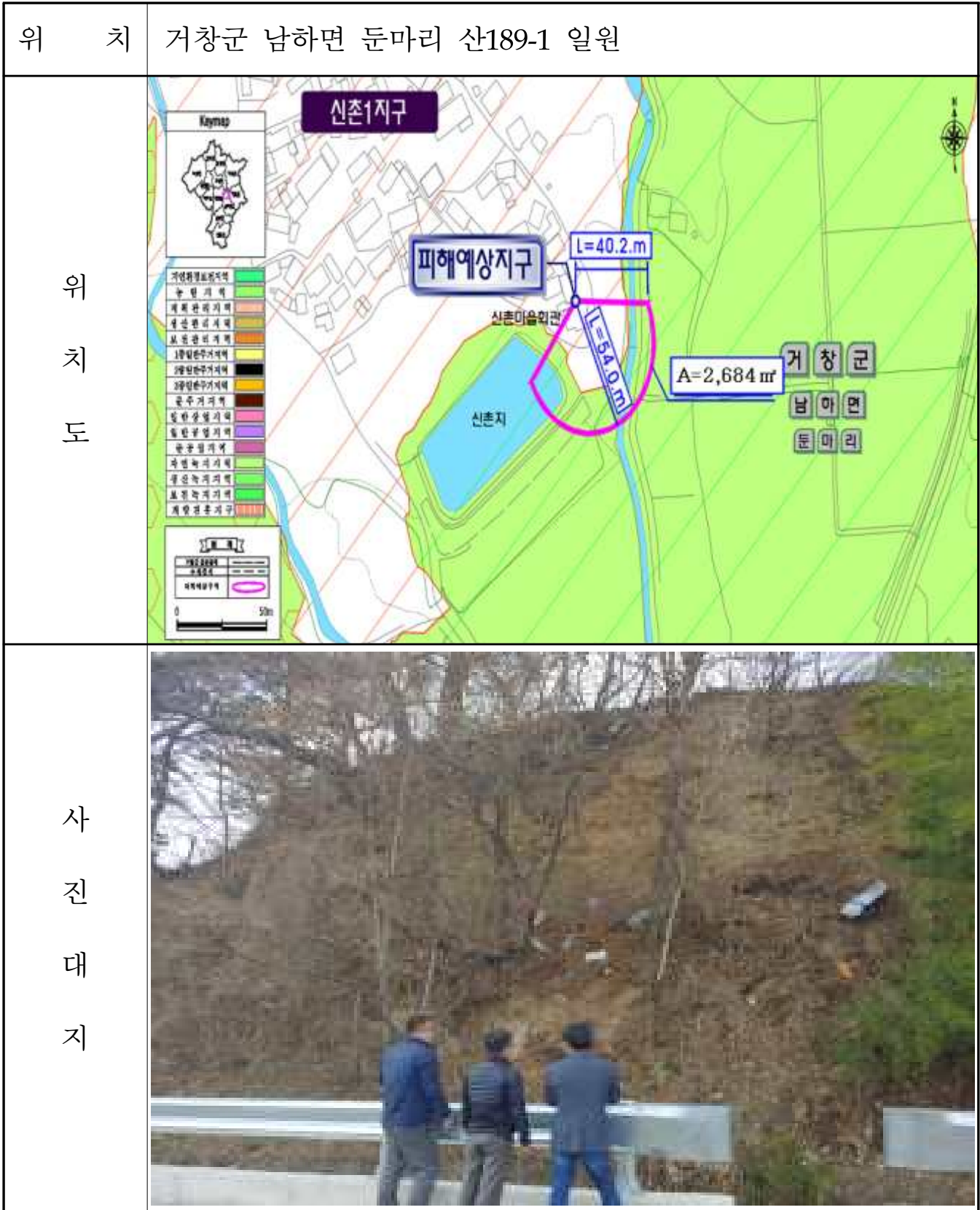
6. 지형도 열람 및 문의처 : 경상남도 거창군 안전총괄과(☎055-940-3652)

-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위치도 및 전경사진 각 1부.
2. 지형도면 고시도 각 1부.

남산1지구 급경사지 위치도 및 사진대지

<p>위 치</p>	<p>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산5-5일원 일원</p>
<p>위 치 도</p>	
<p>사 진 대 지</p>	

신촌1지구 급경사지 위치도 및 사진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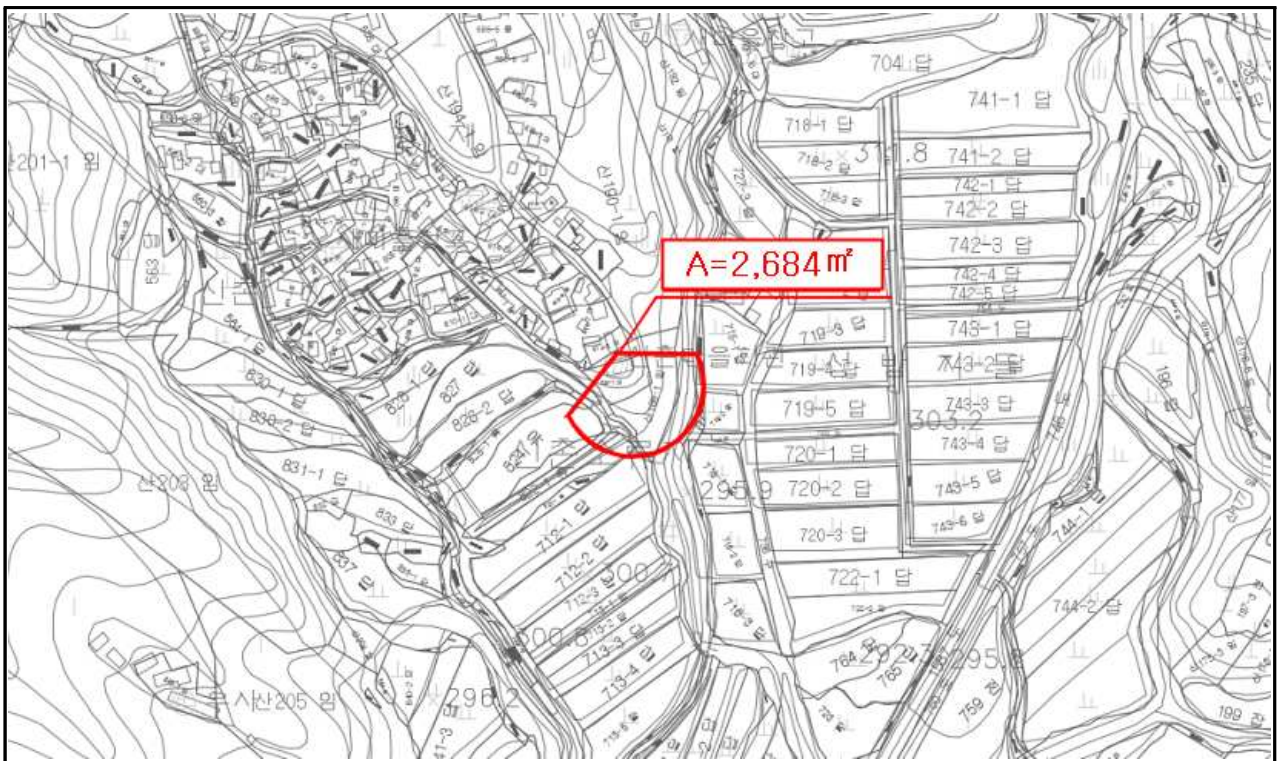


□ 지형도면

1. 남산 1지구



2. 신촌 1지구



※ 토지이용기본규제법 제8조 제2항의 지형도면상 재해위험지구 지정면적은 붉은색으로 표기

거창군 거창읍 고시 제201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거 창 읍 장

하천의 명칭 (하천등급)	거창위천 (지방하천)		
점용자의 성명	거창군 보건소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봄바람~ 건강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에 따른 점용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50-5번지 / A=3,530m ²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9년 4월 8일 ~ 4월 11일(4일간)		

거창군 공고 제2019-395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거창군수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위원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변경함(안 제3조)

1)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수도사업소장

⇒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2) 체육시설사업소장,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설로 총 위원수 24명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다. 우편번호 : 51032, 전화/팩스 : 055-940-3073/3029

이메일 : sun815@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9-
----------	-------

제출일자	2019. 3.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위원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변경함(안 제3조)

1)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수도사업소장

⇒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2) 체육시설사업소장,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설로 총 위원수 24명

나. 법령이나 조례 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2조, 제16조)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위원회 기능

2)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당근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분석의뢰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심의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제2조제2항제4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성격 및 기능) ① 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수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p>제3조(위원)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및 수도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3조(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제7조(의안제출) ①~② (생략)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16조(수당 등) 제3조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1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2018. 12. 12.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조례와 시행규칙과의 용어의 통일성 유지
“이차보전” ⇒ “이자지원”, “이차보전금”⇒“이자지원금”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3. 26. ~ 2019. 4. 15.(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683, FAX : 055)940-3349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을 “(이자지원 지원 신청 절차)”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이차보전”을 “이자지원”으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중 “이차보전금”을 “이자보전금”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이차보전 지원 절차”를 “이자지원 지원 절차”로 한다.

제4조 중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을 “이자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한다.

제5조 중 “이차보전금”을 “이자지원금”으로 한다.

별표 중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이자지원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이차보전”을 “이자지원금”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이차보전금”을 “이자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 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p>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p> <p>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p>제2조(이자지원 지원 신청 절차) 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 이자지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p>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자지원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p> <p>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자지원금의 지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자지원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u>이차보전 지원 절차</u>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u>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u>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지원대상자 심사) <u>이차보전금</u>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자의 심사 순위는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 금액), 사업체 최초 등록일자, 군 거주 연수 순으로 한다.</p> <p>[별표] <u>이차보전</u> 지원 제외대상 업종(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표준산업분류</th> <th>업종</th> </tr> </thead> <tbody> <tr><td>46102 중</td><td>담배, 주류 중개업</td></tr> <tr><td>46109 중</td><td>골동품, 귀금속 중개업</td></tr> <tr><td>46209 중</td><td>일담배 도매업</td></tr> <tr><td>46331</td><td>주류 도매업</td></tr> <tr><td>46333</td><td>담배 도매업</td></tr> <tr><td>46416 중</td><td>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td></tr> <tr><td>46439 중</td><td>총포 도매업</td></tr> <tr><td>47599 중</td><td>총포 소매업</td></tr> <tr><td>47841</td><td>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td></tr> <tr><td>4792</td><td>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td></tr> <tr><td>47999</td><td>기타 무점포 소매업</td></tr> <tr><td>47993</td><td>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td></tr> <tr><td>561 중</td><td>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실시 모범업소는 제외</td></tr> <tr><td>5621</td><td>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td></tr> <tr><td>64</td><td>금융업</td></tr> <tr><td>65</td><td>보험 및 연금업</td></tr> <tr><td>66</td><td>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td></tr> <tr><td>68</td><td>부동산업</td></tr> <tr><td>91121</td><td>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td></tr> <tr><td>9122</td><td>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td></tr> <tr><td>91223</td><td>노래연습장 운영업</td></tr> <tr><td>91291</td><td>무도장 운영업</td></tr> <tr><td>그 밖의 업종</td><td>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td></tr> </tbody> </table>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	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그 밖의 업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p>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u>이자지원 지원 절차</u>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u>이자지원 제외대상 업종</u>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지원대상자 심사) <u>이자지원금</u>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자의 심사 순위는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 금액), 사업체 최초 등록일자, 군 거주 연수 순으로 한다.</p> <p>[별표] <u>이자지원</u> 지원 제외대상 업종(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표준산업분류</th> <th>업종</th> </tr> </thead> <tbody> <tr><td>46102 중</td><td>담배, 주류 중개업</td></tr> <tr><td>46109 중</td><td>골동품, 귀금속 중개업</td></tr> <tr><td>46209 중</td><td>일담배 도매업</td></tr> <tr><td>46331</td><td>주류 도매업</td></tr> <tr><td>46333</td><td>담배 도매업</td></tr> <tr><td>46416 중</td><td>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td></tr> <tr><td>46439 중</td><td>총포 도매업</td></tr> <tr><td>47599 중</td><td>총포 소매업</td></tr> <tr><td>47841</td><td>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td></tr> <tr><td>4792</td><td>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td></tr> <tr><td>47999</td><td>기타 무점포 소매업</td></tr> <tr><td>47993</td><td>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td></tr> <tr><td>561 중</td><td>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실시 모범업소는 제외</td></tr> <tr><td>5621</td><td>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td></tr> <tr><td>64</td><td>금융업</td></tr> <tr><td>65</td><td>보험 및 연금업</td></tr> <tr><td>66</td><td>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td></tr> <tr><td>68</td><td>부동산업</td></tr> <tr><td>91121</td><td>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td></tr> <tr><td>9122</td><td>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td></tr> <tr><td>91223</td><td>노래연습장 운영업</td></tr> <tr><td>91291</td><td>무도장 운영업</td></tr> <tr><td>그 밖의 업종</td><td>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td></tr> </tbody> </table>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	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그 밖의 업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	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그 밖의 업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	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그 밖의 업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관계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018.12.12.)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2018.12.12.)
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2018.12.12.)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2. 개정이유
 - 시장기능이 상실된 위천시장에 대해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 요청에 따라 위천시장을 용도폐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천시장을 삭제함(안 별표 1)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3. 26. ~ 2019. 4. 15.(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683, FAX : 055)940-3349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비고
가조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110-13 일원	
<u>위천시장</u>	<u>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47-1 일원</u>	<u><삭 제></u>
신원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2-4 일원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에 의거 2019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인턴 2명, 농업법인 등 2개소
2. 신청기간 : ~ 2019. 4. 5.(금) 까지
3.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에 제출
4. 지원자격 및 요건
 - 인턴 : 만18~44세 미취업자 청년(최소 3개월 이상 인턴근무가 가능한 자)
 -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명칭이 있어야 함
5. 지원목적 : 선도 농업법인 등에서의 청년 실무연수를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6.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인턴 1인당 원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원 지원)
7. 구비서류
 - 인턴
 - 가. (필수) 사업신청서
 - 나.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다. (필수) 정보제공동의서
 - 라. (필수)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 마. (필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 바. (필수) 병적증명서(남성의 경우)
 - 사. (해당)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아. 기타 해당 증빙서류 등

○ 농업법인 등

가. (필수) 사업신청서, 인턴 운영 계획서

나.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다. (필수) 사업자등록증

라. (필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마. (필수) 2개년 납세(근로소득세) 사실증명서

바. (필수)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이행 협약서

사. (필수) 정보제공동의서

아. (필수) 농업경영체증명서

자. (필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차. (해당) 출자지분 확인서 사본(농업회사법인만 해당)

카. (해당) 스마트팜 준공 후 안내문 사진 또는 복합환경제어기 계약체결서 등

타. (해당)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희망인턴 요구 시)

파. (해당)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하. 기타 해당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에 의거 2019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7명

2. 신청기간 : ~ 2019. 4. 5.(금) 까지

3.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에 제출

4.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1978.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신청 불가)

가.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4.01.0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3.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다.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 주 지 : 거창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5.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6.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보료가

농업인 건보료 정액지원 수준 건보료 323,000원(부과점수 1,801점) 이상이면 지원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수준 건보료 449,000원(부과점수 2,501점) 이상이면 지원제외

※ 위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와 본인세대 모두에 적용하여,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료 산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
 단

7. 구비서류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둘 다)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필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규모 확인(대출을 받고자 하는 취급 금융기관)
- (해당) 사업자 등록증
- (해당)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해당)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해당)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해당)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해당)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해당)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해당)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해당)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신청 공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신청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 9. 27까지

○ 신청기간 : 2019. 3. 26.(화) ~ 4. 9.(화)

○ 사업대상자

-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제한구역 내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
 - *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한 지역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완료 농가는 제외)

<선정 우선순위>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단, 지원받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 완료 해야 함)

<지원대상 시설>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일부 또는 전체 무허가 축사
 - 가축분뇨법에 따른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일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형도면 작성·고시일을 기준으로 함
- (일반지역) 2013년 2월 20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일부 또는 전체 무허가 축사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지적 측량비, 건축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등
 - * 단,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인허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은 자금 지원 불가

○ 지원 한도액 기준

- 농가별 지원 상한액 : 20,000천원 이내
 - * 20,000천원 이상 농가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원

○ 신청서류

-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신청서(서식참조)
- 축산업 허가(등록)증
- 설계계약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신용조사서

○ 신청·접수처 : 거창군 읍·면사무소

○ 신청문의 : 거창군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 055)940-8134

※ 자세한 사항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26.

거창군수

<서식>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현재)	○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젓소, 닭, 양,사슴 등으로 구분 ○ 배출시설 면적 : 허가 배출시설 (), 무허가 배출시설 () ○ 사육형태 : 일관(), 비육(), 번식(), 기타()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연도별 출하실적 :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15	'16	'17	'18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축량(), 설계(), 개보수(), 퇴비사() - 해당란에 모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적법화 진행현황 : 설계도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축량(), 향후 추진() - 해당란에 ○ 표시				
	위반요소 해소방안 :				
	적법화 이행기간 :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설계계약서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농신보 특례적용 시 신용조사 간소화)				
	상기와 같이 2019년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업비		
		용자	자담	계
측량				
	소계			
설계				
	소계			
개보수				
	소계			
퇴비사				
	소계			
기타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_____ m ² (_____ 마리)	_____ m ² (_____ 마리)	_____ m ² (_____ 마리)

정부지원 신청액(용자)	_____ 천원
--------------	----------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신청

2019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2019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전국단위 250명(시도별, 시군별 배정인원 없음)
2. 신청기간 : ~ 2019. 4. 17.(수) 까지
3.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후계농업경영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에 제출
4.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4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희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지원목적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6.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 사용용도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일부 운영자금

7. 구비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 (필수) 사업계획서
- (필수) 대출신청자료
- (필수) 사전신용조사서
- (해당) 경영규모 확인자료
- (해당) 교육이수증, 컨설팅·코칭관련 실적 증명(최근3년)
- (해당) 양성평등 교육 실적, 부부공동경영협약서(최근3년)
- (해당) 자조금단체 가입을 증명하는 납부실적
- (해당) 재해보험 가입증명
- (해당) 공익/비영리단체 회비납부내역 또는 영농봉사활동 실적 증명(최근 5년)
- (해당) 표장/상장 (시장·군수급 이상)
- (해당) 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 (최근 5년)
- (해당)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 (최근 5년)
- (해당) 연간 영농계획서 (최근 5년) 연간일정표, 판매계획 등이 포함
- (해당)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최근 5년) 전산/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시 프로그램명(웹 주소) 및 ID
- (해당)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 HACCP 인증
- (해당)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기타 해당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내용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등 설치내용 반영 신설(안 제5조 6호)
- 나.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안 제13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3. 26. ~ 2019. 3. 31.(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3. 3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조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하고 “편의·위생용품 등을”을 “화장실 관리운영비(편의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에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를”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u>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u></p>
<p>제13조(<u>편의·위생용품의 지원</u>)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편의·위생용품 등을</u>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u>관리운영비 지원</u>)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화장실 관리운영비(편의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에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를</u> 지원할 수 있다</p>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 11. 9.]

[별 표] <개정 2018. 9. 4.>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삭제 <2018. 9. 4.>
- 1의2. 삭제 <2018. 9. 4.>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 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단으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단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추어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뒷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 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

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5조)

다. 다른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3. 26. ~ 2019. 3. 31.(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3. 3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 금액)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
학교명	학교 학년 반		
주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 받은 금 액	원
------	-------------------------	-------------------	---

「거창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

관할 읍·면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의 거창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전자정부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4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나.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제7조)
-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2조)
- 라.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및 증진 등(안 제13조 ~ 제19조)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및 증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수당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제21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3. 26. ~ 2019. 3. 31.(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3. 3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업지원
 - 라. 청년의 생활 안정
 -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1. 거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과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 창업지원금 지급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포상) 군수는 청년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단체 또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제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